# 「발전전략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4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24. 11. 25.) → 2024. 9. 30. 개정 판 (시행 2024. 9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13/compare?from=1646&to=1606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6:17:4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**제4조(소위원회)**<br>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. 〈개정 2022-03-07〉<br>1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.<br>2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.<br>3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.<br>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<br>1.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.<br>2.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팀장(서기), 각 처장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글로컬사회혁신원장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S/W융합교육원장, 교양교육원장, 직원(1)으로 한다.〈개정 2024-09-30〉<br>3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.<br>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 **제4조(소위원회)**<br>① 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. 〈개정 2022-03-07〉<br>1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.<br>2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.<br>3. 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.<br>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<br>1.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.<br>2.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기획처장(위원장), 기획평가팀장(서기), 각 처장, 교육혁신원장, 국제교육원장, 글로컬사회혁신원장, 생활교육원장, 평생교육원장, 학술정보원장, S/W융합교육원장, 스미스학부대학장, 직원(1)으로 한다.〈개정 2024-09-30〉<br>3.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8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.<br>③ 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|